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제60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신성호입니다. 4시로 오랜기간 공부하며 합격수기를 쓰는 날만을 기다려 왔는데, 이렇게 수기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수험생 시절 합격을 위한 팁을 조금이나마 얻고자 합격수기를 많이 읽어보았던기억이 있어, 제 개인적 경험담보다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1차 시험보다는 2차 시험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제가 작성한 의견들이 몇 년 뒤의 출제경향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저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Ⅱ. 과목별 점수

- 1. 민사소송법 (3시: 70점 -> 4시: 58.33점)
- 2. 특허법 (3시: 49점 -> 4시: 49.66점*)
- 3. 상표법 (3시: 46점 -> 4시: 55.33 점)
- * 특허법의 경우 GS때는 평균 10프로 이내에 들었으나, 시험장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들이 감점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Ⅲ. 주요 수강 GS

- 1. 민사소송법 : 이창한 강사님 실전GS A&B형, 곽준형 변리사님 실전GS A&B형
- 2. 특허법 : 남솔잎 변리사님 실전GS, 박형준 변리사님 실전GS & 콜라보GS
- 3. 상표법 : 한경훈 변리사님 실전GS & 콜라보GS, 김주안 변리사님 실전GS

Ⅳ. 1차 시험

1. 민법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과생들이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법과목에 해당하여 상당히 낯설게 느껴질 과목입니다. 초반에는 법률용어와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에 익숙해지는데 초점을 두고, 빠른 속도로 회독을 하며 법과목에 익숙해지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그 후, 용어와 체계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점점 내용의 깊이를 늘려가며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이므로 내용을 하나하나 너무 세부적으로 암기하려기 보단,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빈출지문들을 익히고 "문제를 푸는 감"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다만, 어떤 년도에는 객관식 문제에 대한 감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서의 내용들도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어야고득점이 나오도록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본서도 놓지 마시고 기본서와 문제집을 적절하게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2. 산업재산권법 -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민법을 통해 어느정도 법률에 대해 익숙해진 뒤 접하게 되는 과목들입니다. 하지만, 절차법과 실체법적인 면모가 혼합되어 있어 전체적인 체계를 잘 잡아놓지 않으면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과목들입니다. 따라서, 우선 각 과목별로 큰 체계를 잡아 놓고 그 안에서 점차 세부적인내용으로 들어가면서 내용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2차 시험과 중복되는 과목들이므로 법 조문과 판례를 깊게 이해해놓는 것은 추천하나, 암기는 너무 꼼꼼히 하기 보다는 문제집을 많이풀어보며, 그에 필요할 정도의 암기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1차 시험에서는 법 조문으로 사소한 장난을 많이 치므로, 법 조문집 또는 그에 대한 교재를 따로 마련하여 법 조문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자연과학개론

사실 자연과학은 개개인의 베이스가 천차만별이라 적절한 공부방법을 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물리 • 화학 • 생물 • 지구과학의 모든 과목을 완벽히 학습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베이스와는 상관없이 총 40개의 문제 중 총 점수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를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화학은 전공자라도 욕심을 버리고 지구과학은 무조건 다 맞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4. 3시때의 1차 공부

수험 기간동안 제일 힘들었던 시기를 뽑으라고 하면, 3시에 1차 공부를 했을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차 시험을 2번 탈락하였다는 좌절감과 1차 시험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다시 준비하여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멘탈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1) 민법

1차 초시 때 사용하였던 기본서를 읽어보며 내용이 얼추 기억나고 혼자 기본서의 빠른 회독이 가능하다면 독학을 하고, 내용이 기억이 안나거나 혼자서는 진도가 도저히 안나가는 경우 중급강의를 빠르게 수강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이론을 어느정도 복구하였다면, "기본서"는 사전처럼 삼아 모르겠는 내용을 그때그때 찾아보면서, "객관식 문제집"을 변리사 기출문제부터 시작하여 여유가 된다면 타 시험 기출문제들까지 빠른 속도로 객관식 문제집을 다회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산업재산권법 -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2차 기득을 경험하였다면,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내에 복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2차 공부때는 하지 않았던 조문의 지엽적인 문구들 정리 & 기출문제의 빠른 회독을 통해 객관식 문제의 함정을 피하는 감을 빠르게 끌어올시길 권장드립니다.

(3) 자연과학개론

3시 때 자연과학은 본인의 취향에 맞는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3시 때의 1차 공부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초시 때 경험하였던 전략을 다시 잘 상기시켜보면서, 과한 욕심을 내지 않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V. 2차 시험 - 과목별 공부방법

1. 민사소송법 - 전형적인 틀 숙지

- 1) 특허법 상표법과 달리 정형화된 틀이 있는 과목입니다. 암기해야 할 양이 상당히 많으므로, 개개의 내용인 나무를 보며 공부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인 숲을 그리며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서의 각 단원별 가장 상위 목차부터 하위 목차로의 순서로 전체적인 틀을 수없이 반복 회독하여, 각 단원의 기본서 내 대목차가 무엇이었으며 대목차 내 무슨 쟁점들이 있었는지를 통째로 암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학습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2) 또한, 유명한 논점들의 경우 문제가 나오는 형태가 정해져 있어 써야 하는 목차까지 정해져 있는 논점들이 꽤나 있는데, 이러한 논점들은 미리 답안지에 쓸 목차를 따로 정리해 숙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3) 그리고,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들 중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한 판례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판례들은 사실관계를 어느정도 숙지하고 있으면 판례원문 그대로 문제가 출제될 경우 문제파악이 매우 수월해지므로, 중요 판례이면서 사실관계가 복잡한 판례들에 한해서는 판례원문도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특허법 - 판례별 논점 숙지 & 주소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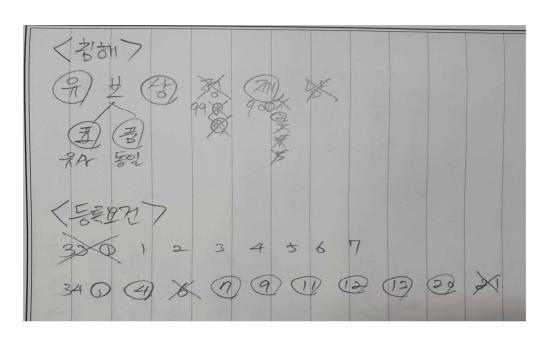
- 1) 추상적인 법률 용어와 기술 내용의 다양함으로 인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상당히 추상적으로 느껴 질 수 있는 과목입니다.
- 2) 특허법을 공부할 때는, 각각의 판례별로 어떤 논점들이 문제가 되었는지 명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지 않는 경우, 하나의 판례를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했는데 엉뚱한 여러 판례를 끌고와서 문제를 푸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소설정의 오류로 인해 논점이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59회 시험의 GIST판례(의약용도발명 진보성 판단방법 & 결합발명 진보성 선행발명 결합요건이 논점)가 있습니다.
- 3) 또한, 상당히 복잡한 판례들(의료용 실 삽입장치 사건 등)은 판례의 논점과 더불어 사실관계도 정리를 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요판례들의 경우 기술내용도 대략적으로 숙지하면 판례의 이해에 도움이 되므로, 판례의 사실관계와 기술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면 숙지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술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스스로 정리 자료를 만드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 4) 그리고 문제 또한 상당히 러프하게 출제되므로, 기출문제를 소홀히 하지 말고 꼼꼼히 분석하여 기출문제의 경향과 스타일을 파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3. 상표법 - 판례별 구체적 사안 숙지 & 문제풀이 틀 숙지 & 주소 설정

- 1) 상표법은 비교적 내용을 이해하기가 용이하며, 구체적인 상표에 기초하여 판례들이 설시가 됩니다. 따라서, 추상적으로 학습하는 특허법과 달리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삼아 판례를 이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허법과 달리 구체적인 사안을 자세히 파악해 놓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므로, 판례들의 사실관계가 도식화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판례들을 숙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2) 상표법은 문제의 형태가 한정적이라 반복되는 유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들에 대해서는 본인만의 틀을 만들어 기계적으로 그 틀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가서,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침해"에 대한 문제는 유·보·상·정·제·남을 펼쳐서 검토했으며, "등록요건 or 무효사유"에 대한 문제는 33조와 34조의 각 호를모두 펼쳐서 검토했습니다. 아래에, 제가 문제를 풀 때 사용하던 틀중 일부를 첨부합니다.

3) 최신 중요 판례는 원심 판례의 유사판단 등(대법원에서 파기되지 않은 부분)도 숙지해놓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번 60회 시험 문제 2번 masmi 판례를 원심까지 숙지해놓은 결과, 원심에서 양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유사판단한 논거를 그대로 답안지에 작성하였습니다.



VI. 2차 시험- 문제 푸는 방법

1. 문제 읽는 순서

1) "문제의 사실관계가 설문보다 긴 경우"에는, 설문부터 빠르게 읽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문제의 설문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므로, 물어보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사실관계를 읽으며 그에 필요한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읽어나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문제의 사실관계가 설문보다 짧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본인의 취향대로 읽으면 될 것같습니다. 저는 문제 사실관계가 오히려 설문보다 짧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먼저 읽었습니다.

2. 문제 표시 방법

문제를 읽으며 표시 할 때, 형광펜을 사용하는 그룹과 연필로만 표시하는 그룹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형광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색을 본인의 기준에 맞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형광펜을 사용하기가 귀찮아서 사용하지 않았으나, 형광펜을 사용해서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합격생들도 보았습니다. 이하에서는 연필로 푸는 경우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또한, 실제 시험장에서 제가 표시하였던 예시도 첨부하였습니다. 이미 본

인의 문제 표시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그에 따라 표시하시면 되고, 표시 방법을 고민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 "인물"의 경우 인물별로 다른 도형으로 표시했습니다.
- 2) "날짜"의 경우 꺽쇠표시 하였습니다.
- 3) "발명 or 상표,상품"의 경우 괄호표시 하였습니다.
- 4) 중요한 내용은 물결 표시 하였습니다.
- 5) 집중력 향상 및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중간중간 동그라미와 밑줄을 그었습니다. (큰 의미 는 X)
- 6) 문제의 사실관계 옆에 따로 빼서 논점을 적어놓거나 결론을 적어놓았습니다.
- 7) 설문에서 물어보는 바가 여러개인 경우, 누락 방지를 위해 원문자로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 표시했습니다.
- 8) 문제 설문 옆에 정답을 적어두었습니다. (머리속에서만 정답을 생각하는 경우, 실수로 정반대의 결론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9) 문제의 사실관계를 읽으며, "트리거 문구"가 보이는 경우 그것이 무엇에 대해 묻는 쟁점인지를 옆에 따로 빼서 기재해 놓았습니다. ("트리거 문구"의 파악은 출제의도 파악 & 논점파악과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 10) "상표법"의 경우에는 상품과 서비스의 구별이 매우 중요하며, 상품인지 서비스인지 & 각각 몇 개씩 포함되어 있는지를 표시했습니다.

【 문제-3 】(30점)

单条 2000년 이후에는 <u>지속적으로</u> 방송과 신문, 전국 공항과 기차역에 광고와 <u>협찬 비용으로 매년 30억 원 이상 지출</u>하였고, 이에 따라 (제주감귤주스)는 2010 년 이후부터는 <u>전국 매출액이 500억 원이 넘었다.</u> 그리고 <u>음료수 시장에</u>서의 점 유율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 이후부터는 38%를 상희하고 있다/

中은 2022. 12. 30. 특허청에 제주감귤주스를 상표법상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과실음료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위 제주감귤 주스'가 2022. 1. 1.부터 사용된 것이어서 단기간 사용된 것이立 산지와 월재로 만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상품표장이라는 이유로 상표등록개절이용를 통지하였다.

- (1) 환의 (제주강귤주스)가 사용에 의한 실별력 최득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12점)
- (2) 원 (1)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3) 경쟁업자인 <mark>군은 (제주감귤주스)가 비록 상표등록이 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자자 아니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도의 주장과 관련하여 판례 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6점)</mark>

3. 문제 사실관계가 긴 경우 읽는 방법

- 1) 문제 사실관계가 매우 긴 경우, 사실관계를 아무생각 없이 읽다보면 전체적인 내용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시간이 매우 낭비가 됩니다.
- 2) 설문을 먼저 읽어 물어보는 바를 명확히 파악한 후, 사실관계에서 설문과 관계있는 것과 필요없는 사실관계를 구별하며 읽었습니다. 사안의 해결과 관련 없는 사실관계는 빠르게 지나 갔습니다.
- 3) 사실관계의 문단별로 특정 쟁점에 대해 사안포섭을 해야 할 경우, 문단옆에 어떤 쟁점에 대해 사안포섭 할 것인지를 적어놓았습니다. ex) 이 문단은 인식도에 대한 문단이고, 이 문단은 부정한 목적에 대한 문단이다.
- 4) 트리거 문구를 명확하게 숙지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판례를 정확이 이해하거나 기출문제를 충분히 분석하며 숙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사실관계를 읽으며, 트리거 문구가 보이는 경우 그것이 무엇에 대해 묻는 쟁점인지를 옆에 따로 빼서 기재해 놓았습니다.

4. 시간 관리 방법

- 1) 각 과목별로 총 4개의 문제를 36분/24분/36분/24분 시간에 맞춰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시간관리에 있어서 가장 도움을 받았던 방법은 "실시간 피드백"이었습니다.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면서 수시로 시간을 확인하며, 36분/24분/36분/24분을 최대한 지켜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2)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통상적인 경우, 1번 문제에서 난해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 멘탈이 나가 40~45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그로 인해 2번 문제를 풀고나면 1시간이 초과하여, 3번과 4번에서 말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1번 문제를 풀 때부터 실시간으로 시간을 피드백하며 36분을 초과할 것 같으면, 답안지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낮아보이는 목차 or 내용을 과감하게 빼가면서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1번 문제를 완벽하게 쓰고 싶은 욕심이 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욕심을 버리고 1번부터 시간에 맞춰 답안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1번문제에서 40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 3) 위와 같은 실시간 피드백은 이와 같은 전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2차 시험은 50점 분량의 문제를 각각 1시간씩 2번 시험 보는 것입니다." 1&2번과 3&4번의 채점자가 상이하므로, 1&2번에서 아무리 완벽한 답안을 써도 3&4번의 채점자는 그를 알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과목별로 "100점 분량의 시험을 1번 보는 것이 아니라, 50점 분량의 시험을 2번 보는 것"이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색다른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 4) 아래 답안지 작성방법에 제가 각 과목별 목차의 우선순위에 대해 제 의견을 적어놓았으 니, 실시간 피드백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특허법 • 상표법에서 시간이 부 족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문제의 소재 & 사안에 필수적이지 않은 일반론들을 빼면서 작성하 였습니다.

5. 출제의도 파악 방법

- 1) 출제의도 파악은 변리사 2차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답안지를 수려하게 잘 써도 출제의도와 부합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 2) 저도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는데, 기출문제&GS문제 들을 풀 때 마다 설문별로 출제의도가 무엇인지 분석하는데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출제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다보면 어느순간부터 조금씩 출제의도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논점을 내려고 할 때 던지는 트리거 문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트리거 문구들을 숙지해 놓고 그러한 문구들이 보이면 빠르게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3) 설문의 문구 하나하나 왜 주어졌는지 꼼꼼하게 분석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甲의 조치에 "대응한" 乙의 조치를 물어보면 위에서 기재한 甲의 조치에 하나하나 대응시키며 반박할 수 있는 조치를 써야하는 것이지,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조치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예시로, 조치를 물어봤는데 선결적으로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설문에서 물어본 것은 "조치"이므로 침해여부에만 공을 들이고 정작 조치는 간략하게 써버리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설문에서 물어본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Ⅷ. 2차 시험 - 답안지 작성방법

수험생 시절 답안지 작성방법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만큼, 이 부분을 집중하여 기재해 보았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제가 정리해놓았던 답안지 작성방법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단순히 제 사견이 아니라 여러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결론 내린 것이기는 하나, 그래도 제 주관적인 의견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들을 감안하고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위에서 말씀드린 "실시간 피드백"시 목차별 우선순위를 정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공통사항

- 1) 교수님들은 수험생들이 얼마나 지식이 풍부한지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교수님들의 지식의 깊이 기준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깊게 공부를 하였든간에 그분들을 지식으로 감동시킬수는 없습니다.
- 2) 따라서, 거의 모든 문제가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는 변리사 시험에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집요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답안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3) 긴장을 하고 시간에 쫓기다보면, 판례는 풍부하게 잘 써놓고 사안포섭을 부실하게 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출제자는 문제의 사실관계를 아무 의미 없이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판례를 기재하였으면 사안포섭은 반드시 그 판례를 문제의 사실관계와 하나하나 매칭시켜 포섭하여야 합니다.

2. 민사소송법

- (1) 전반적인 특징
- 1) 일반론이 꽤나 중요한 편입니다. (다만, 절대로 사안의 해결과 관련 없는 일반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답안지의 인상은 어느 과목에서나 중요하지만, 답안지의 형식적인 측면은 비교적 중요 도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2) 문제의 소재

- 1) 민사소송법에서는 배점이 매우 낮게 나오지 않는 이상, 거의 필수적인 목차라고 생각합니다.
- 2) 원칙적으로는 사안을 곁들이면서 논리적으로 적어주는게 가장 바람직하나, 문제의소재는 배점이 있어봤자 1~2점이고 시간의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논점들을 나열하듯이 적어주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3) 학설

- 1) 민사소송법도 최근에는 교수님들도 판례에 비해 학설을 비교적 중요시 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 2) 다만, 변리사시험의 특성상 다수의 수험생들이 학설을 기재하기에 나만 기재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비어보일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학설을 쓰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진리탐구를 떠나서, 나만 안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3) 다만, 학설은 채점자들이 판례에 비해 자세히 읽어보지 않을 확률이 높으므로 지나치게 길게 적을 실익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너무 빈약하게 적으면 비어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논거 1개씩은 잘 현출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4) 판례

- 1) 판례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2) 판례를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 원문의 키워드와 흐름을 충실히 살려 잘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3) 다만, 민사소송법에는 굉장히 많은 판례가 존재하고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판례를 충실하게 암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요판례들은 꼼꼼히 외워두고 나머지의 판례들은 키워드 1~2개 또는 판례의 흐름 정도만 익혀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5) 검토

- 1) 학설과 마찬가지로 최근 교수님들은 판례에 비해 검토를 비교적 중요시 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 2) 학설과 마찬가지로 변리사 시험 민사소송법에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검토를 기재하므로, "상대평가"라는 점을 감안하여, 너무 공을 들이기 보단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로만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사안포섭

- 1) 대부분 수험생들이 민사소송법은 사안포섭을 간결히 치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2) 그러나, 특상에 비해서는 분량을 적게 가져가더라도 최소한 반드시 판례의 키워드를 사안과 결부지어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본인의 언어 표현대로 사안포섭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문제에 주어준 사실관계를 꼼꼼히 포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인물/소송물/금액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 포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 대충 "원고의 청구"라 하는 것이 아니라, "甲의 말소등기청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7) 결론

- 1) 문제의 소재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에서는 중요한 목차라고 생각합니다.
- 2) 다만, 배점이 1~2점 부여되는 목차이므로 너무 공을 들이기 보다는, 해당 설문에 대해 내가 기재한 대목차들을 잘 모아서 간략히 정리하는 식으로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8) 기타 민사소송법 답안지학

선결 논점들을 잘 기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드시 논점과 "관련 있는" 선결논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 특허법, 상표법

- (1) 전반적인 특징
 - 1) 답안지에 정형적인 형식이 있다기보단, 개인마다 답안지가 천차만별입니다.
 - 2) 채점자마다 채점 스타일이 극과극이며, 출제의도 파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 문제의 소재

- 1) 민사소송법과 달리, 문제의소재에 배점을 부여하는 교수와 부여하지 않는 교수로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 중 어떤 교수님이 당해 시험 출제자로 누가 들어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 2) 배점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목차에 해당하므로, 저는 되도록 10점 이상의 설문에 만 작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3) 학설

- 1) 특허법과 상표법에서 학설은 정말 중요도가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 2) 중요판례 암기조차 부담이 많이 된다면, 학설은 거의 외우지 않아도 무방하며 불안하면 과목별로 정말 중요한 학설 몇 가지만 알아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4) 판례

- 1) 판례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 2) 판례의 흐름만 맞아도 어느정도는 득점이 들어가는 민사소송법과 달리, 판례를 정말 잘 현출해야 온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민사소송법에 비해서는 판례의 개수가 적긴 하나, 모든 판례를 원문 가까이 현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중요판례들은 정말 원문에 가깝게 현출할 준비를 하고 나머지 판례들은 암기 선명도를 조금은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4) 위에서 말하는 "원문 가까이"라는 말은, "키워드"들을 놓치지 않고 잘 외워서 현출해야 한다는 것이지, 키워드 사이의 조사들까지 그대로 외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 검토

- 1) 학설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조금 높으나, 전체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요소입니다.
- 2) 사례형 문제에서는 중요도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며, 단문형 문제 or 법리를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검토의 기재실익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사안포섭

- 1) 판례와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 2) 많은 수험생들이 본인은 시험이 끝나고 나서 사안포섭을 잘 했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 3) 사안포섭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문제의 사실관계와 판례의 키워드를 접목시켜 충실히 써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해보이겠지만 시험장의 긴장 속에서 모든 문제에이를 충실히 사안포섭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4) 출제자가 문제의 사실관계에 던져준 사실관계를 "가능한 요약하지 않고" 판례 키워드와 연결지어 작성해주면, 사안포섭을 잘 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결론

문제의 소재와 마찬가지로 배점이 들어갈지 출제자에 따라 달라지는 목차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결론을 쓰지 않으면 설문이 물어보는 바를 명료하게 답변한 기분이 들지 않아, 시 간적 여유만 된다면매우 간략하게라도 결론을 적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4. 답안지 인상을 좋게 만드는 방법

특허법·상표법에서는 답안지의 인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표법) 개인적으로 답안지의 인상으로 점수가 갈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지는 모르겠으나, 인상을 좋게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인상을 높인 다는 것의 기본전제는 "상당히 논리적인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채점자가 빠른 시간안에 채점이 가능하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 2) 목차만 보고도 무엇을 썼는지 알수 있어 채점이 가능하도록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3) 무엇을 쓸지 정해주어 묻는 설문들은 "물어본 그대로" 목차를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 4) 목차를 적당히 상위개념화 하여 묶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차를 지나치게 많이 묶어 하위목차가 너무 많이 내려가는 것도 부적절하며, 목차를 너무 분설하여 대목차를 남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5) 대목차에 결론을 표시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소극)
- 6) 글씨를 이쁘게 쓸 필요는 없으나, 가독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점자들이 채점을 하다보면 웬만한 글씨는 알아 볼 수 있다고 하나, 정말 못 알아보겠는 글씨는 배점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씨의 가독성을 높이는 가장 손 쉬운 방법은 자음을 크게 쓰는 것입니다. 자음을 의식적으로 크게 쓰면 가독성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Ⅷ. 2차 시험 - 문제 유형별 접근방법

1. 판례형

타겟 판례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여, 판례를 선명하게 현출하고 판례원문의 논리와 흐름을 잘 살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사례형 - 기본적인 사례형

- 1) 특허법 상표법에도 계속 반복되는 유형의 사례형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형 문제들은, 그 틀을 만들어놓고 해당 문제가 출제될 때 마다 그 틀을 바로 꺼내 문제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사례형 문제는 판례형 문제와 달리 기본적으로 다각적인 기재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절대로 단순 나열식의 기재는 지양해야하며 조치들간에 주논점과 부논점을 구별하여 강약조절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사례형 - 특수 사례형

- 1) 기본적인 조치문제들과는 달리 생전 처음 보는 사례형 문제들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이를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으며, 기본적인 조치문제들에 대한 틀을 확실히 익혀 두고 사고를 유연하게 하려는 마인드를 가지다 보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 2) 답을 모르겠다고 분량을 못 채우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소설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분량에 맞게끔은 조치를 기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 단문형, 약술형

- 1) 아주 간혹 출제되나 수험생들에게 상당히 괴로운 유형입니다. 이 또한 특수 사례형과 같이 완벽히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과목별로 중요하다고 꼽히는 단문들에 한해 준비하는 것이 수험 적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2) 이러한 유형은 평소에 어떤식으로 큰 틀의 목차를 잡을 것인지 생각해두어, 평소 GS에 출제되는 경우 그 틀에 맞추어 연습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3) 준비해놓은 단문이 아닌 이상 완벽한 답안을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법전을 펼쳐서 빠르게 스캔하거나 머릿속에서 관련 내용들을 스캔해보는 것이 방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IX. 2차 시험 - 4시때 변화를 준 것

1. 자기 객관화 - 메타인지

- 1) 4시 때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은 "자기 객관화" 였습니다. 돌이켜보면 3시 때는 기득때까지 해오던 공부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조금 더 개선하는 것에만 급급했던 것같습니다.
- 2) 자기 객관화란 시험이 끝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 3) 이미 자신이 해오던 공부방법과 답안지 작성방법이 있다면 이 과정은 상당히 하기 싫고 귀찮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만의 사고에서 벗어나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사고"가 무 엇일지 끈임없이 고민하며, 본인의 공부방법 & 답안지 작성방법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끈 임없이 평가하며 발전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 4) 그렇다고 하여 본인을 평가절하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의 경우에는 나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은 갖음과 동시에, 절대 자만하지 말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 오답노트 - 실수도 회독하자

- 1) 4시 때 하였던 2번째 큰 변화는 오답노트 작성이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각 과목별 실수 포인트들과 답안지 작성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보이면, 그 즉시 모든 사항들을 오답노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한, 누락하기 쉬운 파트들은 별도로 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시간이 흘러 분명이 까먹게 됩니다.)
- 2) 다만, 오답노트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답노트를 만든 뒤, 오답노트도 별도로 수없이 회독하여 문제를 풀다가 그 논점이 보이면 자동으로 오답노트가 떠오를 경지가 되도록 숙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하에 제가 만든 오답노트 중 일부를 첨부합니다.
- 3) 저는 2차 시험은 "실수 방지 싸움"이라는 마인드로, 누락 방지에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오답노트 중 발췌]

<특허>

- *출원이 있거나 or 등록 가능성 판단시, 습관적으로 선공지와 선출원 여부 체크하기 *공지등으로 볼 사정이 주어지면 무조건 옆에 빼서 체크해놓기
- *청구범위나 청구항이 주어지는 순간 청구항이 여러개인지 체크
- *청구항이 여러개 주어지고 등록가능성·등록받기 위한 조치·무효심판 결과·침해여부 등을 물어보면, 무조건 청구항 별로 나눠서 검토해주자!
- *[자유실시기술항변 문제풀이틀] [문.판.공]
- 문언침해 여부 -> 판단대상 --> 공지예외대상 여부 체크
- *[권리범위확인심판 적부 관련 체크리스트] [침.무.권]
- 침해소송 계속 여부, 무효사유 명백 여부, 권리대권리 여부

<상표>

- *"상품별"로 장난치기 좋다
- *33조1항3호가 논점이면 34조1항12호전단•90조1항2호도 체크하기
- *[사식취 문제풀이틀] [실.주.후.표.품.유.제]

사용실적 확인(특출식이 주어졌으면 판례 없이 포섭만 해주면 됨) --> 주체 동일여부 확인(몬 테소리) --> 등록 후 사식취 여부(뉴발란스) --> 상표 동일여부(K2,몬테소리,경남대) --> 상품 동일여부(본인이 출원하여 등록받는 상품을 말하는 것임) --> 유사판단시 요부 가부(뉴발 란스), 사통동 상품여부(알파)(상대방이 사용하는 상품을 말하는 것임) --> 효력제한 여부(재능교육) *인지도를 외국에서만 취득한 경우, 국내 인지도 요구 조문들 적용 주의

- *등록가부 판단 시 33조. 34조. 35조 모두 스캐하기 (특히 34조1항7호와 35조 누락 주의)
- *34조1항7호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침해판단할 때, 데이터팩토리 누락 주의
- *"34조1항7호" 극복조치에선 "34조2항", "35조" 극복조치에선 "35조3항" 선결 기재 누락 주의
- * "성명,상호" --> 34조1항6호•90조1항1호•99조2항 체크하기 + 34조1항 9내지13호•99조1항 도 함께 논점 가능

<민사소송법>

- *항상 인물/소송물/금액 각각 별개로 꼼꼼히 판단해주자 (특히 일부 불복하거나, 전부 불복해 도 각각 판단이 다른 경우)
- *불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판단이 논점일 때는, 이심여부와 심판대상 논해주자 (심판대상 확장은 부대항소 유의)
- *"새로운 증거로 심증을 형성했다"라는 문구가 보이면 증명효 논점 의심
- *항소한 경우 습관적으로 소각하판결에 대한 항소인지 체크하기
- *소각하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된 경우 418조 논점 의심, 항소·상고 모두 청구기각설 논점 의심

3. 기초를 다지기

특히 3시 이상이 되면 각 과목들의 내용이 익숙해지므로, 본인이 이론은 다 안다는 가정하에 나머지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 빈틈이 느껴진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해당 과목의 기본강의 or 판례강의를 다시 찬찬히 수강해보며 기초를 다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X. 기타

1. 글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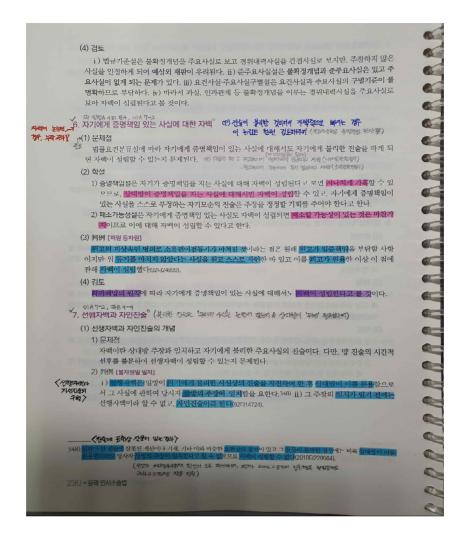
2차 시험은 손으로 작성하는 시험이므로, 글씨체 가독성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백강고시체를 구매하여 고시체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매일 15~20분 정도 투자하여 연습하였습니다. 가독성을 손쉽게 높이는 방법으로는 자음을 크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쓰기 연습

쓰기 연습을 얼마나 할지는 정답이 없으며 개개인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쓰기에 자신이 있다면 매주 주말 GS때 쓰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쓰기에 조금 부족함을 느낀다면 GS외에도 평일에 쓰기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교재 정리 방법

저는 학설에는 빨간색 형광펜, 판례에는 파란색 형광펜, 검토에는 보라색 형광펜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교재의 각 논점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 & 스스로 정리한 내용들을 옆에 그것을 기재해 놓아, 교재 회독시 주의사항들도 함께 회독하였습니다. 아래에 교재의 일부를 첨부합니다.



4. 기출문제 분석

매년 출제경향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기출문제들을 잘 숙지해놓으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다시 출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하여 "러프함"에 적응하고 반복되는 유형들은 확실히 숙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5. 스터디

저는 4시 때 쓰기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평일에 하루 1시간씩 50점 분량의 답안지를 작성후, 10~15분 정도 답안지의 인상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 스터디였습니다. 암기 스터디•출석스터디 등 많은 스터디 종류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답안지 쓰기 스터디는 매우 추천드립니다.

6. 마인드 컨트롤

장기 레이스를 달려야 하는 시험이므로 마인드 컨트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스스로 컨트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동기부여를 찾거나 스터디 메이트를 두는 등 장기적으로 마인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매 GS 답안지 작성 시 단순히 학원 수업을 듣는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매 회차마다실제 시험에 임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본인의

예단을 최대한 버리고 시험장에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며 출제의도를 파악한 다음 담백한 답안지를 작성하려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장에서는 과도한 긴장감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 미리 시험 당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많이 돌려보시길 권장드립니다.)

7. 휴식

휴식을 어느정도 할 것인지는 개개인별로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저는 1주일에 하루를 통째로 쉬거나, 이틀에 걸쳐서 하루만큼 시간의 휴식을 취했습니다. 강철체력이 아닌 이상 너무무리를 하여 휴식 없이 달리시기 보다는, 장기 레이스를 달려야 하는 시험인만큼 중간중간 본인에게 소소한 힐링을 주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XI. 마치며

제가 많이 고민하였던 부분들을 떠오르는대로 최대한 작성하여 보았는데, 부디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분들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랜 수험기간 동안 저를 끝까지 믿으며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수험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도움을 주신분들이 정말 많은 데, 멘탈적으로나 수험적으로나 정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끝까지 완주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질문이 많은 수험생이었던 저의 질문을 잘 받아주신 분들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제 얘기를 들어주며 위로해주셨던 분들과, 아낌 없이 도움을 주려 하였던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만 이 글을 읽어주신 예비 변리사님들의 합격을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